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69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박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소진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1. 3.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202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60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는 D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4259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902,319원 및 그 중 4,040,532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4. 6.까지는 연 34.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2018. 5.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4. 10. E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다시 양도받고, 그 양도사실을 그 무렵 D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6. 29.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부친 F과 모친 G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F이 2021. 3. 29. 사망하자, D를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의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6. 10. 자신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다음 G의 지분에 대하여도 같은 날 2021.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2. 5. 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G로 된 2003. 9.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사단법인 I이 제출한 문서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D의 2021년 총 급여는 10,200,000원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을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은 2022. 3. 15. D에게 반환하여야 할 예금 14,827,689원 중 압류금지생계비 1,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07,689원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년 금제268호로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22. 6.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 배당절차에서 1,136,702원을 배당받아 2022. 6. 28.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D는 2023. 1. 21. L에 대한 2,936,000의 채무는 전액 변제한 사실, D는 M이 영업하는 N 포항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의 기본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D가 2021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10,200,000원은 2021. 5.분까지의 급여 내역이고, 미신고한 수당 14,795,488원에 대해서는 M이 지급을 연체하여 D가 2021. 9. 1.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체불 내역을 신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이후 H조합에 G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2003. 9.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입증하고, 그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다만, 공동담보가액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적은 경우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수영

별지